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¹⁾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

II. 검토의견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실시를 위한 시행일 조정

개정안은 일몰 규정²⁾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전부 삭제하고, 이와 동일 내용으로 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모두 2026년 1월 1일임.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저(低)운임에 따른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화물운송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써,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3년 일몰제(2020.1.1. ~ 2022.12.31.)로 운영되었는바, 현재는 일몰 기간 경과로 제도가 실효된 상태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5조의11³⁾제2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사전(매년 10월 31일까지)에 공표하여야 하나, 안 제5조의11의 시행일 역시 안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이어서 그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⁴⁾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의9⁵⁾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안전운임위원회는 안 제5조의10⁶⁾제2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안전운임을 심

-
- 3) **안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현행 제5조의4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내용이 문언상으로는 남아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부칙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임.
- 5) **안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의결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도 모두 2026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어, 그 이전에는 안전운임위원회의 안전운임 심의·의결도 불가능함.⁷⁾

따라서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안전운임위원회의 안전운임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운임을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부칙 제1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6년 1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 다만, 제2조제12호·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6) 안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마찬가지로, 현행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이 문언상 남아있으나, 이 중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여 적용할 수 없음.

2. 2026년도 적용 안전운임 공표를 위한 특례 신설

안 제5조의11제2항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표하여야 하는 ‘2026년도 적용 안전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를 마치는 것이 시행령 개정, 위원회 위원 대표 선출과정에서의 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안 제5조의11제2항에 대한 특례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부칙 제4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신 설>	제4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

8) 안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 하여야 한다.
--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 관련 경과조치 신설

개정안은 일몰 규정⁹⁾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현행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전부 삭제하고, 이와 동일 내용으로 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이나, 삭제 대상 조문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외의 사항인 ‘안전운송원가’¹⁰⁾와 관련되는 부분¹¹⁾은 위 일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동일 내용으로 다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안전운송원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가 신법에 의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컨테이너·시멘트 등 품목에 대하여 강제성이 있는 운임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그 외 품목(철강·일반형 화물차 품목 등)에 대하여 강제성 없이 운임 협상 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것을 말함. 안전운임제와 달리 안전운송원가제는 일몰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인 상태임.

11) 현행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사항을 제외한 부분

예를 들어, 현행 제5조의4제1항¹²⁾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하는바, 이 법 시행 전에 2025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하게 될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신법에 따라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운송원가는 신법의 규정(안 제5조의11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¹³⁾

[안 부칙 제5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u><신 설></u>	부 칙 <u>제5조(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u>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13) 현행 제5조의2에 따라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경과조치 신설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안전운임위원회는 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2026년 1월 1일)에 맞춰 새로 구성할 계획인바, 이 경우에는 별도로 경과조치 신설이 불필요해 보임.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